

#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(성흠제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14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2월 04일

발 의 자 : 성흠제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기대, 김달호, 김재형, 김정태, 김제리, 김진수, 김평남, 노승재, 문장길, 박상구, 박순규, 이광성, 이광호, 임종국, 최웅식, 황인구 의원(16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 교통정책 수립과정에 교통약자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체계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교통약자를 포함토록 노력의무 규정을 마련코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교통위원회 위원 구성 시 교통약자를 포함토록 노력의무를 규정함.(안 제4조제3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2조제1호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사람으로 한다.”를 “사람으로 하며,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구성)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</p>	<p>제4조(구성) ③ ----- ----- ----- -----<u>사람으로 하며,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